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의 통합관리를 위해 의료평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기관 지정(안 제42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의12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의12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u>
<u>⑧</u> (생략) <u>⑪ ~ ⑭</u> (생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u>⑫ ~ ⑮</u>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06